

〈서 평〉

## 1. 劉基天博士古稀紀念, 「法律學의 諸問題」

(*Festschrift for Prof. Dr. Paul K. Ryu*, 博英社, 1988)

## 2. *Helen Silving Memoirs*

(by Helen Silving with the cooperation of Paul K. Ryu,  
Vantage Press, 1988)

金 哲 洙\*

### I. 劉基天교수의 生涯

1988년에는 韓國이 낳은 著名한 刑法學者요 法學教育者인 劉基天교수를 위한 古稀論文集이 出版되었고 그 夫人인 Helen Silving 女史와 共著로 *Helen Silving Memoirs*가 出刊되었다. 이 두 책을 통하여 劉基天博士의 生涯와 思想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要約해 보기로 한다.

劉基天교수는 1915年 7月 5일에 出生하였다. 1939년에는 Himeji 高等學校를 卒業하고 東京大學法學部를 1943년에 卒業하였고 1943년부터 2年間 東北大學校助敎로 근무하였고 1958년에는 Yale大學校에서 法學博士(J.S.D)學位를 取得하였다. 1946년에 서울大學校가 開校되자 助敎授로 就任하였으며 釜山避難時節에는 學長署理로 일하였으며 1958년에는 敎務處長을 歷任하였고 1961년에는 서울法大學長으로 就任하였고 1962년에는 서울大學校司法大學院長을 兼任하였다. 1964년에는 서울大學校에 法學研究所를 新設하여 所長을 兼任하였고 1965년에는 서울大學校總長으로 就任하였다. 1966년에는 學問의 自由를 위요한 다툼으로 總長職을 물러났다.

總長在職時에도 法學研究所長을 兼職하였고 總長辭任後에도 法大교수로 계속 刑事法講義를 맡았었다. 1971년에는 總統制實施陰謀를 公表하고 學問의 自由를 위한 鬭爭을 하다 敎職에서 追放되었다. 1979年 10·26以後 敎職免職處分이 高等法院에서 取消되었다. 그러나 5·17後 再任命을 받지 않았다는 理由로 復職되지 못하고 停年退任式도 갖지 못하였다.

劉基天교수의 刑法學이나 法哲學에 관한 評價는 專門家에게 맡기기로 하고 여기서는 法學教育者로서의 業績을 보기로 한다. 劉基天교수는 서울大學校法大의 創立敎授로 就任한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뒤 高秉國學長을 모시고 敎務課長으로서 韓國의 法學敎育의 方向을 設定하였다. 1950年 6·25事變이 일어나자 서울法大의 學籍簿들을 재빨리 避難首都 釜山으로 옮겼고 서울法大學 長署理로 在任하면서 避難地에서의 法學敎育을 별 지장없이 치루어내었다. Iris會의 指導敎授로 刑事法學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케이스·메소드에 의한 講義를 창시하였고 司法試驗에서도 케이스를 出題하기 시작하여 空理空論에 빠지기 쉬운 刑事法을 判例中心으로 공부하도록 하였다.

劉基天博士는 論文·著書를 많이 쓰시어 學界에 寄與한 바도 큰데 外國語로 된 重要著書 論文만 하여도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Books in English*

THE KOREAN CRIMINAL CODE, In the American Series of Foreign Penal Codes, Volume 2 (Fred B. Rothman & Co., N.J.) 1960;

SUPPLEMENT TO SILVING, "CRIMINAL JUSTICE" (William S. Hein & Co., Inc. 1977): co-author Helen Silving;

Preface to, and "Academic Freedom"

in Chapter VI of, Helen Silving Memoirs (Vantage Press, N.Y. 1988)

(b) *Book in German*

DAS KOREANISCHE STRAFGESETZBUCH, Sammlung ausserdeutscher Strafgesetzbücher (Walter de Gruyter, Berlin 1968).

(c) *Articles and Contributions to Collective Works English and German*

1. The New Korean Criminal Code of October 3, 1953, An Analysis of Ideologies Embedded in It, 48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275 (1957);
2. Causation in Criminal Law, 106 U. of Penn. L. Rev. 773 (1958);
3. Contemporary Problems of Criminal Attempts, 32 New York U.L. Rev. 1170(1957);
4. Error Juris: A Comparative Study, 24 Univ. of Chicago L. Rev. 421 (1957); co-author Helen Silving;
5. Toward a Rational System of Criminal law, Seoul National U.L. Rev. 1962; and 32 Rev. Jur. U.P.R. 119 (1963); co-author Helen Silving;
6. "Field Theory" in the Study of Cultures: Its Application to Korean Culture; in Symposium on the occasion of the Third East-West Philosophers' Conference, U. of Hawaii Press, pp. 648-669 (1962);

\* 法律學의 諸問題 p.xvii 이하에서 전재.

7. Toward Unification of Private Law, in World Peace Through Law Proceedings (Athens World Conference 1963); West Publishing Co., 1964, p.752 et seq.;
8. Nullum crimen sine actu, Seoul National Univ. L. Rev. (1966); co-author Helen Silving;
9. Nullum crimen sine actu, in German,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77. Band, Heft 3/4 (De Gruyter, Berlin 1965); co-author Helen Silving;
10. Legal Education in the Far East, in World Peace Through Law Proceedings(Washington World Conference 1965); *ibid.*, 1967, p.752 et seq.;
11. Research, Legal Education and Training, in World Peace Through Law Proceedings (Geneva World Conference 1967), published as World Peace Through Law, the Geneva Conference (1969), pp.443-455;
12. What is Meant by "Legal Educatio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in Bangkok World Conference on World Peace Through Law (1969), pp.850-858;
13. Legal Education in Asian Countries, Lawasia Proceedings (Kuala Lumpur Conference 1968);
14. "International Criminal Law"—a Search for Meaning,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Vol. I, pp.22-49, ed. Bassiouni & Nanda (Charles C. Thomas Publisher, Springfield, Ill. 1973); co-author Helen Silving;
15.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 Vol. I(National Reports) of 17 Volumes, ed. Max-Planck-Institute for Comparative Private Law, Hamburg, Germany.
16. Was bedeutet die sogenannte "Relativität der Rechtsbegriffe?" im Archiv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Vol. LIX, pp.57-96 (1973), Franz Steiner Verlag GmbH, Wiesbaden/Germany; co-author Helen Silving;
17. Misleading Issues in Criminal Law Codification, 9 Israel L. Rev., No. 3 (July 1974); co-author Helen Silving;
18. Methodological Inquiry into the Problem of "Protest," in Revista Juridica de la Universidad de Puerto Rico, Vol. 43, 9-40 (1974); co-author Helen Silving;
19. Discussion of Structure and Theory, in Symposium The New German Penal Code, 24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602-614 (1976); based on a Paper read in the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of 1975 in Washington, D.C.:
20. "Is the Crime of Parricide Unconstitutional?" in ESSAYS IN HONOR OF HELEN SILVING, in 46 UPR L. Rev. Nos. 3-4 (1977), pp.555-572;

21. The Concept of "Insanity," in CONTEMPORARY PROBLEMS IN CRIMINAL JUSTICE, *Festschrift* for Mr. Justice Dando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Vol. V, Foreign Contributors' Section, pp.191-212 (1983), Yuhikaku, Tokyo, Japan; co-author Helen Silving.
22. Comments
  1. Comment on Error Juris, 24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689-693(1976).
  2. Comments on Legal Education in Korea, Pup Hak 155-162, a speech at the Royal Asiatic Society meeting in Seoul, Korea on the 10th of June, 1964.
  3. Legal Education in the Far East, *ibid.*, pp.117-128; this paper was originally written for distribution at the World Peace Through Law Conference in Washington, D.C. held September 12-18, 1965.
23. Criminal Sanctions, in preparation.

1952년에는 Smith-Mundt Program으로 Yale大學에서 研究하였고 1954년에는 Harvard Law School의 Visiting Scholar로 2年間 在任하면서 運命의 女人인 Helen Silving女史를 만나게 되었다. 1956년에 歸國해서는 美國法講義를 충실히 하였고 日本法學에 치우쳤던 당시 英美法을 소개하는데 注力하였다. 日本서 大學生活을 보낸 뒤에 美國에서 法學을 研究해 본 결과 美國式 法學教育의 優秀性을 터득하고 우리나라 法學教育에 美國式 教育方法을 도입하기에 이른 것 같다.

그는 당시의 有名無實했던 法官試補制度를 개혁하여 美國式 Law School의 設立을 推進하였다. 당시 趙鎮滿大法院長과의 合意에 의하여 서울大學校에 司法大學院을 두어 法曹人教育을 실시하였다. 司法大學院制度는 劉교수의 創意와 推進力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그 當時의 在學生들이 法曹界와 法學界에서 頭角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그의 着想이 出衆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司法大學院制度의 발전을 위하여 美國에서 教授를 초빙해 왔고 또 教授要員으로 많은 法曹人을 美國에 留學보냈다. 그 중 一部分을 들면 姜信玉변호사, 申鉉柱변호사, 故姜求真교수, 金永珉변호사들이 있다.

司法大學院制度는 法曹界의 沒理解와 法學界의 無關心에 의하여 劉基天교수의 退任, 趙鎮滿大法院長의 退任으로 폐지되고 大法院傘下의 司法研修院으로 탈바꿈했다. 그의 主要한 業績 하나가 世人의 無關心에 의하여 廢止되고 日本式인 司法研修院制度로 된 것은 日帝植民地의 思考의 產物이라고 하겠다.

劉基天교수는 法學發展에 있어서의 研究所의 必要性을 切感하여 1964年 3월에 韓國法學研究所를 設立하여 所長職을 兼職하였다. 司法研修院學生의 訓練과 法學者의 養成을 위하

여 註釋判例集을 發刊하였다. Asia 財團과 USAID, ILC 등의 財政援助를 받아 서울大學校 「法學」을 비롯한 學術誌를 刊行하였고 專任研究員을 두어 學者養成에도 기여하였다. 劉總長에 의하여 法學研究所의 專任으로 採用되었다가 나중에 法科大學教授로 轉補된 사람으로 는 李壽成교수, 梁承圭교수, 白忠鉉교수, 崔松和교수, 金裕盛교수등이 있다.

1971年末 劉基天교수는 他意에 의하여 美國으로 移住하였다. 亡命地에서도 韓國의 民主化를 위하여 努力하셨으나 獨裁政權下에서는 감히 劉교수의 回甲記念論文集조차 낼 수 없는 입장이었다. 6·29宣言이후에야 劉博士를 위한 記念論文集이 編輯되게 되었다.

## II. 劉基天博士古稀記念 「法律學의 諸問題」

劉基天博士古稀記念論文集編纂委員會에 의하여 編輯된 이 論文集은 第1編 刑事法, 第2編 民事法, 第3編 其他 法領域으로 構成되어 있다. 序文을 編纂委員長인 郭潤直교수가 썼고 金贊鎭辯護士가 Dr. Paul K. Ryu as We Know Him을 썼다. 金贊鎭辯護士는 그를 韓國刑法學界의 “K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劉교수의 生涯와 業績에 관해서 기술하고 劉교수의 民主主義에 관한 鬭爭을 叙述하고 있다.

第1編인 刑事法에서는 外國의 著名한 教授와 國內의 教授, 判事, 檢事들이 論文을 寄稿하고 있다. Hastings College of Law의 有名한 Jerome Hall교수는 Some Unresolved Problems에 관한 論文을 寄稿하였는데 序文에서 Paul K. Ryu와의 交友를 이야기하고 있다. 東京大學校名譽教授이며 前最高裁判所判事였던 團藤重光教授는 「刑事訴訟法에 있어서의 主體性的理論」을 寄稿하였다. 團藤教授는 東京大學時節 刑事訴訟法講義의 聽講者였던 劉교수가 重要한 業績을 내어 그에게도 배운 점이 많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다음에는 Mueller 교수와 Adler 博士에 의한 Mens Rea, Crime Control and the Internalization of Values가 실려 있다. 다음에는 Wayne State University의 Ralph Slovenko 교수가 The Continuing Saga of the Insanity Defense를 기고하고 있다. 다음에는 Puerto Rico大學의 名譽教授인 Helen Silving夫人이 Criminal Law Defenses neglected in American Law를 쓰고 있다. 外國의 著名한 教授들이 古稀記念論文集에 寄稿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의 交友가 世界的임을 알 수 있다.

國內刑事法學者로는 金鍾源교수가 「韓國刑法改正의 基本方向」을 집필하고 있고, 孫海睦교수가 「緊急避難論」을, 李在祥교수가 「結果反價値와 行爲反價値」를, 朴陽彬교수가 「責任論의 發展과 故意」, 申東雲교수가 「間接正犯의 本質에 관한 一考察——判例의 立場과 관련하여——」, 朴秉濠교수가 「刑罰法上の 家父長의 地位」, 任雄교수가 「非犯罪化論의 意義와 根本思想」, 金文煥교수가 「크레디트카드犯罪에 관한 小考」, 崔秉祚교수가 「古代演述論과 犯罪概念徵表의 分析」, 崔鍾軍교수가 「스티븐스陪殺事件——한 刑法史的 考察——」을 기고하고 있다.

이 밖에도 實務家로는 林完圭部長判事が 「刑法總論理論의 再構成에 관한 試論」을, 孫晉坤部長判事が 「刑事裁制에 있어서 忌避權의 濫用」, 白亨球辯護士가 「拘束期間에 관한 理論的·實務的 考察」, 朱光逸次長檢事가 「被害者救護法制定의 基本方向」, 金贊鎮辯護士가 「七·四南北共同聲明과 反共政策——國家保安法廢止論에 대한 批判」을, 申鉉柱변호사가 「Application of Linear Programming Methods to the Planning of Justice Administration」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 刑事法寄稿家들은 모두가 劉博士의 直接弟子이거나 間接弟子들이다.

民事法分野에서는 郭潤直교수가 「不動產登記의 記載事項에 관한 問題點——登記年月日の 記載의 必要性——」을, 梁彰洙교수가 「留置權의 發生要件으로서의 債權과 物件간의 牽連關係」, 李銀榮교수가 「契約拘束力의 根據」, 鄭燦亨교수가 「株式會社의 經營機關——比較法을 中心으로」, 金相容교수가 「헨리 조지와 孫文의 土地思想」을 기고했다. 또 金光年 변호사가 「繼續的保證의 責任限度——判例를 中心으로——」, 李鍵浩변호사가 「繼續的保證의 責任限度 및 解止——最近의 우리나라 判例를 中心으로——」, 김영우·정계성·은창용변호사가 「新株引受權附社債의 海外發行」, Kim Byong-Joon 변호사가 「Corporate Opportunities and Director's Fiduciary Duty」, 金平祐변호사가 「傷害保險의 特殊性」, 金柱祥院長이 「債權者의 滿足을 目的으로 하는 假處分」, 姜玟中部長判事が 「證明責任」, 朴英植部長判事が 「交通事故에 있어서의 民事過失과 刑事過失」을 기고하고 있다.

第3篇 其他法領域에서는 憲法, 行政法, 經濟法, 國際法등의 論文이 실려 있다. 憲法分野에서는 鄭德藏支院長의 「憲法上 法院과 國會 및 政府와의 關係」, 梁建교수의 「敎科用圖書檢定에 관한 韓國과 日本의 判例——이른바 敎育權論과 관련하여」(판례평석), 行政法分野에는 徐元宇교수의 「美國行政法上的 規則制定權에 관한 問題」가 기고되어 있고, 國際法分野에는 吳炳善교수의 「國際法에 있어서의 衡平의 問題」, 李泰熙변호사의 「國際司法共助에 관한 研究」가 있고, 經濟法分野에서는 權五乘교수의 「獨占規制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梁明朝교수의 「特許權의 濫用과 獨占禁止法」, 尹寶玉교수의 「美國獨占禁止法에 관한 序論的 考察」, 李玲愛部長判事의 「歐州共同體의 獨占禁止法」이 있다. 이 밖에도 美國法에 관한 것으로는 辛永茂변호사의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관계법개요」, 李相敦교수의 「友好通商航海條約과 美國의 公正雇傭法規——Sumitomo Shoji America, Inc. v. Avagliano에 관한 小考」가 실려 있다. 法哲學的인 것으로는 張榮敏교수의 「法·理性·論議——法學에서의 論議理論의 展開」, 安京煥교수의 「William Rehnquist 判事의 法思想」이 실려 있다.

이 論文集은 우리나라 學界와 實務界의 重鎮들이 多數의 珠玉같은 論文을 싣고 있어 學者 뿐만 아니라 實務家 學生들에게도 必讀의 書라고 생각된다. 讀者들의 一讀을 勸해 마지 않는다.

### Ⅲ. Helen Silving Memoirs

劉基天博士의 夫人인 Helen Silving의 Memoir을 보자. Helen Silving은 “美國刑法學에 있어서의” 혹은 “世界刑法學에 있어서의” “최초의 女學者”로 불리워지는 美國의 刑法 및 法哲學者이다. 그녀는 9권의 책과 무수한 論文의 著者이며, Encyclopaedia Britannica등 수많은 백과사전에의 寄稿家이며, 20세기의 諸事件에 대한 權威있는 批評家이기도 하다. 그러나 적어도 이 나라의 法學研究者들에게 있어서 그녀는 단순히 한 사람의 특출한 外國人 法學者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그녀의 특별한 關係 때문이다.

Helen Silving이라는 이름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나라 法學史에 있어서 중요한 人物 중의 한 사람인 劉基天 博士의 부인으로서 기억되는 것이다.

또한 그녀는 서울大法大에서의 3學期 동안의 강의와 서울大學校「法學」에 게재된 5편의 論文\*에 의해서도 이 나라의 法學研究者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그녀의 이러한 특별한 關係 때문에 우선 그녀의 책 Helen Silving Memoirs는 우리의 관심을 끈다. 특히 이 책이 學術的인 著書나 法廷에서의 이야기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感性이 풍부한 個人的 經驗에 비추어진, 현저한 世界的인 事件들——戰爭, 政治的・經濟的 激變, 3大陸에 걸친 學問的 소용돌이——속에서의, 한 法學者의 삶을 그녀 자신이 기술하였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책의 많은 부분이 劉基天 博士와 韓國에 대한 기술이라는 점, 또 劉基天 博士가 그 序文을 썼다는 점 그리고 박정희정권에 대한 그의 抵抗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Helen Silving Memoirs는 여자의 몸으로 20세기의 政治的 소용돌이를 힘겹게 헤치고 나온 유대인 法學者의 삶이라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녀의 ‘색다른’ 남편인 한 特出한 韓國人 法學者의 信念에 찬 學問的・政治的 삶이라는 모습으로, 지난 時代의 이 나라의 歷史를 특히 그 중에서도 法學의 歷史를 되짚어야 할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 우리의 관심 속으로 깊숙이 다가서는 것이다.

Helen Silving Memoirs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형식상으로는 1편 유럽, 2편 미국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첫째는 그녀의 個人的・學問的 삶에 대해 全般的으로 기술한 부분이고, 둘째는 미국의 政治 및 法體系를 비판한 부분이며, 세째는 反유대주의에 대해 분석하고 그녀의 유대주의에 대한 信念을 고백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들 각부분은 그녀의 확고한 宗教的 信念을 바탕으로, 人種的・政治的・文化的・學問的인 모든 不正義에 대한 抗拒라는 하나의 主題 아래 묶이어져 있으며,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구체적인 抵抗의

\* Toward a Rational System of Criminal Law, “Guilt,” 서울大學校 法學 제 4권 1·2호; Nulum Crimen Sine Actu, “Stare Decisis” in the Civil and in the Common Law, 法學 제 6권 1호; The Operation of American Democracy in Law, 法學 제 10권 1호.

모습들로 가득 차 있다.

Helen Silving은 폴랜드의 Krakow에서 부유한 사업가의 딸로 태어났다. 오스트리아에서 그레머 스쿨을 나오고 폴랜드에서 김나지움을 졸업한 후, 비엔나 대학에서 政治學과 法學을 전공하여 學位를 받았다. 히틀러가 비엔나를 侵攻해 들어 오자 그녀는 폴랜드로 갔으나 미국 이민수속을 밟기 위해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녀의 오빠를 도우기 위해 두번이나 다시 히틀러 支配下의 비엔나로 가야 했다. 그녀는 당시에 겪은 히틀러의 소름끼치는 유대人虐殺을 낱말이 묘사하면서 자신이 그 위험을 빠져나와 미국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神의 뜻’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녀의 父母와 수많은 친척, 친구들이 다른 6백만명의 유대人과 함께 나찌에 의해서 殺戮당하였다. 그녀는 그것을 ‘獨逸民族’의 犯罪라고 비난한다.

Helen Silving에게 있어서 Hans Kelsen은 특별한 人物이었다. 그녀는 Kelsen을 자신의 ‘全生涯를 통한 偶像이자 先生’으로 표현한다. Silving과 Kelsen의 관계는 오스트리아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Kelsen으로부터 일찍부터 재능을 인정받았으며, Kelsen의 아파트에서 개최된 教授와 博士課程履修者들의 정규모임에 참석하는 유일한 學生이었다. 그녀의 學問的 才能은 그 모임에서 발표한 近代 哲學·物理學·經濟學·心理學 및 法學의 公同的 特質에 관한 論文에 의해 Kelsen의 확고한 인정을 받았으며, 그후 Kelsen은 미국에서의 그녀의 學問活動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Silving과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이민와 당시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 Kelsen과 그녀는 케임브리지의 한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고, Kelsen은 그녀에게 자신의 助教가 될 것을 부탁한다. 그녀는 하버드에서 Fuller교수를 만나게 되어 그의 추천으로 콜럼비아 大學校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고 곧 뉴욕州 辯護士試驗에 合格하게 된다.

콜럼비아에서의 공부를 위해 Kelsen의 助教의 일을 그만두게 된 이후에도 그녀에 대한 Kelsen의 도움은 계속되어, 그의 추천으로 그녀가 그후 20여년간 在職한 프예르토리코大學校의 法學教授에 임명되게 된다. 또한 Kelsen은 그녀를 Roscoe Pound 75歲記念論文集의 寄稿家로 추천하며, 그녀가 그 論文集에 실은 論文 ‘純粹法理論의 見지에서 본 法과 事實 (Law and Fact in the Light of Pure Theory of Law)’ 이 Jerome Frank 判事 등 法現實主義者들의 주목을 받아 그후 Frank判事와 Helen Silving 사이에 全生涯를 걸친 知的 紐帶關係가 지속되게 된다.

Helen Silving Memoirs에서 Silving은 學問的 自由를 위협하는 수많은 편견에 대한 그녀의 抗拒를 위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콜럼비아 大學 時節의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例의 하나이다. 그녀가 콜럼비아 로리뷰의 편집자가 되기 위해 應試했을 때, 그 委員會는 法과 事實의 구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大法院判決에 대해 評釋하는 일을 그녀에게 맡겼다. 그런데 그녀가 評釋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편집장은 자신이 로마大學校의 강사였다는 이유에서 그녀의 評釋의 내용에서부터 용어법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간섭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녀는 그와 다투었으나 결국 편집자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그녀는 로리뷰의 編輯委員會가 그렇게 全體主義的이고 權威主義的이어서는 안된다는 자신의 믿음을 위해 소망하던 편집자에의 꿈을 버린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하버드에서 그리고 프예르트 리코에서도 계속된다. 그녀는 男女·人種·地域의 差別 등의 모든 편견이 그녀의 삶과 學問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劉基天 博士의 學問의 自由에 대한 鬭爭이 Helen Silving Memoirs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된다. 즉, '學問의 自由(Academic Freedom)'이라는 小題目 아래 劉博士 자신이 쓴 자신의 鬭爭記錄이 상세히 전개된다. 그 記錄 속에서 그는 韓日協定과 관련한 자신의 서울大學校 總長 임명과정, 서울大學校 總長으로서의 자신의 活動, 서울法大學校 總長으로서의 學生除名에 대한 거부, 경찰의 學生暴力에 대한 강의실에서의 비난, 三選改憲後 서울法大生의 除名에 대한 教授會議席上에서의 비난발언과 다른 教授들의 제지, 그후의 중앙정보부의 추적과 미국행에 나서게 된 과정, 崔鍾吉 教授의 억울한 죽음 등에 대해 언급한다. 그리고 Silving은 그녀의 남편의 學問의 自由를 위한 鬭爭에 대해 學者로서 全의인 同感을 표시하고 '世界의 모든 法科大學에 대해 教訓'이 되는 것이라고 評價한다.

Helen Silving Memoirs는 또한 유럽대륙과 英·美間의 學問體制 및 學問의 삶에 있어서의 차이에 대한 Silving의 分析을 담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콜럼비아 大學校 로스쿨과 비엔나大學校 로스쿨의 教育體制 및 內容을 비교한다. 이러한 작업은 그녀 자신의 여러 나라에 대한 關係로부터 얻은 경험과 많은 知識 그리고 8個國語의 구사능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었으며, 그 속에서 그녀는 각각의 文化的 맥락 속에서 學問의 自由의 의미를 밝혀내고 있다. 그녀는 이 부분에서 그녀 자신이 폴란드와 나찌時代 오스트리아에서 유대인으로서, 미국에서 女子로서 그리고 유럽으로부터의 망명자로서, 한국에서 미국인으로서, 2次大戰후의 유럽에서 미국인으로서 편견에 가득 찬 취급을 당한 것을 슬퍼한다.

Helen Silving Memoirs에는 Silving의 미국 社會 및 그 憲政에 대한 分析도 담겨 있다. 劉基天 博士에 따르면 그녀의 分析은 Montesquieu의 「法의 精神(Esprit de lois)」나 Tocqueville의 「美國의 民主主義(De la Démocratie en Amérique)」에 비견되는 法的·比較文化的인 分析일 뿐만 아니라 그 위에 哲學的인 깊이까지 갖춘 것이다.

그녀는 먼저 Watergate 事件을 分析한다. 1974年 Nixon이 백악관을 떠났을 때 미국의 言論이 한 입으로 외친 “미국의 體制는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녀는 “미국의 體制(the American System)은 무엇인가? 그것은 作動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 그녀는 大衆으로부터 判斷의 自由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미국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언론은 큰 실책을 범했다고 주장한다. Nixon은 사실상 미국의 司法體系와 政治制度의 道德的 妥當性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方式으로 축출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言論이 그 反對者에 대한 大衆의 접근을 막으면서 '言論·出版의 自由'의 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그 自由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며, 이점에서 ‘情報의 自由’의 중요성이 주목되어야 한다고 結論짓는다.

또한 그녀는 權力과 金力の 타락한 권계를 다루어, 富者에 의한 貧者의 政治的 抑壓을 허용한 Buckley v. Valeo 이래의 미국 大法院判決 등을 비판한다. 미국의 政治制度에 대한 Silving의 이러한 分析들은 결국 政治的 良心에 대한 심각한 再考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Helen Silving Memoirs는 위에서 살펴본 哲學的·政治的·法學的 批判과 함께 그녀의 다양한 경험에서 우리나라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도 담겨 있다.

그녀는 神의 그리고 神에 대한 아가페적인 사랑, 父母의 헌신적인 사랑, 친척간의 사랑, 스승과 동료학자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男女間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책의 곳곳을 아로새기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하버드 로스쿨에서 시작되는 그녀의 남편 劉基天 博士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서로의 學問的 才能과 學者의 良心에 대한 존경으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Helen Silving의 父母가 나찌에 의해 살해된 것과 마찬가지로 劉基天 博士의 父親이 평양에서 순교하였다는 공통점에서부터 출발한 모든 고난 즉 그들의 宗教的·人種的·文化的 差異를 극복한 結合에 대한 온갖 비난을 극복하는 가운데 거의 宗教的인 단계에로까지 승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敵意와 邪惡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도 神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고 있다고 믿으며, 많은 文化的 共通點을 가진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과 韓國의 희망찬 友情을 상징하도록 운명지었다고 믿는다.

Helen Silving Memoirs는 ‘사회에 보다 큰 奉仕를 하기 위해’ 지금은 法學과 政治學에 관한 著述에만 전념하고 있는 ‘特別한’ 두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유대인의 딸로 태어나 나찌의 학살로 父母와 많은 친척을 빼앗기고, 이민간 미국에서도 性別的·社會文化的·學術的인 많은 고난과 싸워야 했으며, 韓國人 남편과의 특별한 結合에 따르는 수많은 편견들을 극복해야 했던 Helen Silving, 그리고 學問에 자신을 바치고 항상 學問과 政治의 關係를 생각하며, 學問의 自由를 위해 獨裁權力과 싸우다 결국은 異國으로 떠나야 했던 Paul K. Ryu. 이 두사람이 그들의 信念과 그들의 特別한 結合을 통해 온몸으로 저항한 不正義에 대한 거부와 삶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정치한 學術論文에서는 얻을 수 없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의, 특히 法學研究者의 문제들 즉 學問의 길은 무엇인가? 學問의 自由는 무엇인가? 그리고 正義는 무엇인가? 이들 문제들에 대해 Helen Silving Memoirs는 살아있는 목소리로 그 해결을 위한 한 모습을 제시해 주고 있다.

#### IV. 結 語

劉基天博士와 Helen Silving教授는 美國 San Diego에 臨時로 寄居하고 있다. 老教授夫婦가 祖國인 韓國에서 보다 편안한 餘生을 보내기를 바라며 건강히 後進의 指導와 育成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곧 喜壽를 맞게 될 두분의 만수무강을 빈다.